

[별표 4] (제11조제2항제3호 관련)

## 댐 휴게소·매점 임대차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이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댐 휴게소·매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계약의 체결)** ①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댐 휴게소·매점의 경우 “을”은 임대차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시 가맹점 입점 약정서를 제출한 가맹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가맹업자가 가맹점 입점 약정서에 기재된 가맹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3조(가맹업자의 변경금지)** ① “을”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 가맹업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을”과 가맹업자와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갑”과 “을”간에 체결한 댐 휴게소·매점 임대차 계약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가맹업자의 해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갑”의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갑”이 가맹업자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가맹업자(댐 매점의 경우 한국 편의점협회에 등록된 가맹업자에 한한다)와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2개월 경과 시까지 “을”이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은 댐 휴게소·매점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가맹업자 변경에 따른 영업 정지기간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